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및  
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4. 21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. 4. 21

다. 상정일자 : 2006. 5. 1

(제1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재무과장 박노선)

#### 가. 제안사유

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기능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, 계약체결 방법, 낙찰자 결정방법,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,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(안 제4조)
-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함(안 제12조)
-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(안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제4항과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, 제109조
- 예산조치 : 1,700천원
  - 위원회 수당 : 70,000원 × 10명 = 700,000원
  -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: 20,000원 × 50건 = 1,000,000원
- 입법예고 : 2006. 2. 10 ~ 3. 2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6. 1. 1 시행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정하고, 위원회 위원과 감독자 등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8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, 5억원 이상의 물품 ·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, 계약체결 방법,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고,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하며, 심의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, 변호사,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사하구 경리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장 · 포장공사, 배수로 설치공사 등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며
-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본 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
-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개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
-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·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긍정적으로 판단되나,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로 인한 문제점,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